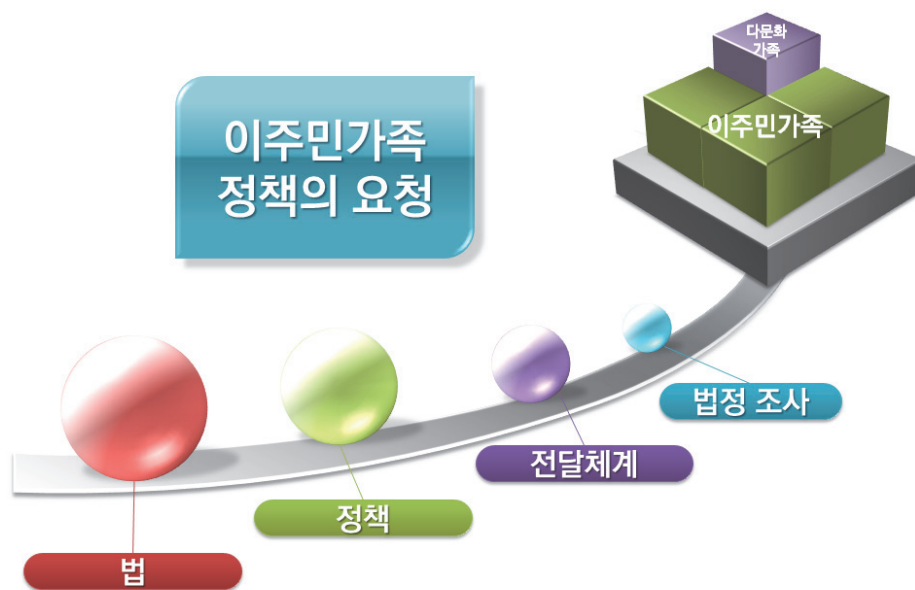


다문화가족에서 이주민가족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

초록

- ▶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43.2%이며, 자녀가 있는 외국인 중 자녀가 한국에 있는 경우는 51.3%로 적지 않은 이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거주하고 있음.
- ▶ 이들은 가족결합의 의지, 자녀 돌봄의 이유로 가족 이주를 결정하였으나, 한국에서의 높은 생활비 총당의 부담, 체류자격으로 인한 취업 제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가족의 부적응 문제는 성장기 자녀, 동반 배우자뿐만 아니라 주이민자에게도 각각 발생하고 있으나, 지원제도의 한계와 현장에서의 적용 혼란으로 적절한 도움이 제한되고 있기도 함. 이러한 어려움으로 정착도 귀환도 어려운 거주 전망의 유동성이 발견됨.
- ▶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주민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은 부재함. 이주민 관련 가족 단위 정책은 주로 다문화가족, 즉, 가구 내 한국 국적자가 포함된 가족만으로 한정되기 때문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기반하여 이주민가족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으로의 전환과 개선 필요성을 제안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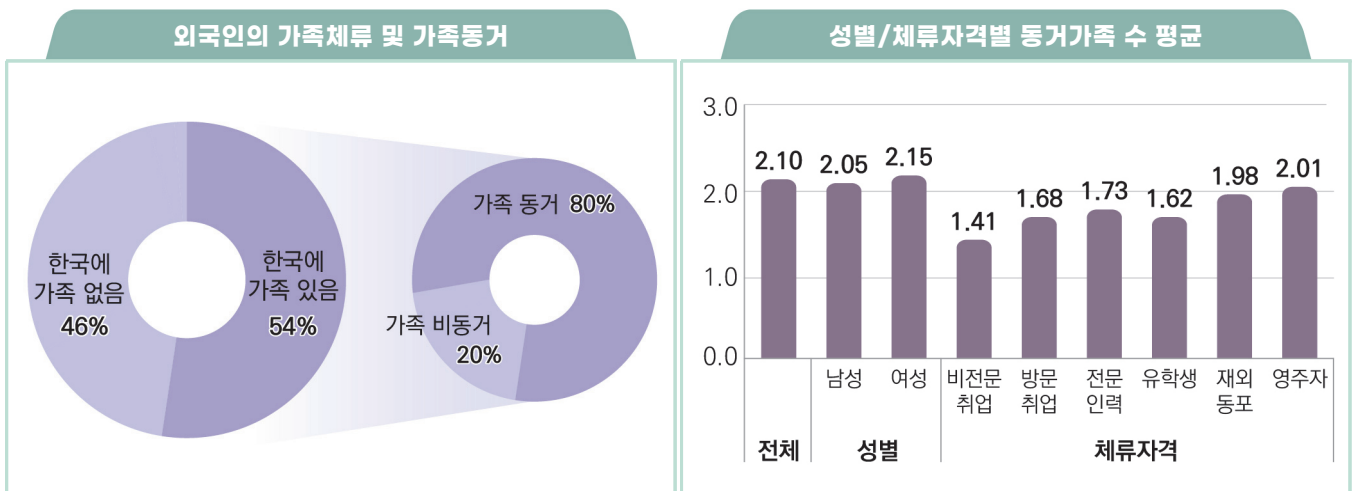
1 배경 및 문제점

-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족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위상 강화 및 정부의 적극적 외국인 유치 정책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은 우수인력의 장기 체류 및 배우자 등 가족동반을 고려하고 있어 향후 우리사회 이주민가족의 증가가 예상됨.
- ▶ 그러나 이러한 변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주민가족을 위한 정책은 부재함. 이주민 관련 가족 단위 정책은 주로 다문화가족, 다시 말해 가구 내 한국 국적자가 포함된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 최근 국민통합위원회나 새정부 국정과제에서 다문화가족 중심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조짐이 있는 등 전체 이주민가족을 대상으로하는 정책 논의는 가속화될 것이 전망됨.



2 이주민가족 현황

- ▶ 장기체류외국인은 2019년 약 173만 명에서 2023년 188만 명으로, 이주배경학생 중 외국인가정 자녀는 2020년 24,453명에서 2024년 47,010명으로 증가하였음.
- ▶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통해 이주민가족 구성과 양태를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43.2%이며, 가족과 동거하는 가구 규모는 평균 2.10명임. 자녀가 있는 외국인 중 자녀가 한국에 있는 경우는 51.3%임.



3 이주민가족의 체류 현실

- ▶ 이주민가족 3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선주민가족은 물론 다문화가족들과도 상이한 이슈에 직면해 있었음. 분석결과, 이주민가족들은 다양한 동기와 경로로 한국에 입국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취업제한과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음. 체류자격은 취업, 거주, 자녀 성장을 결정짓는 이주민 가족생활의 핵심임. 이주민가족의 부적응은 구성원별로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빈약함. 대부분의 이주민가족은 장기 체류를 희망하지만, 현실의 장벽이 높고, 그렇다고 귀환을 선택하기에도 삶의 근거를 한국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착도 귀환도 쉽지 않음

01

가족이주 경로

가족초청 vs 독자적 자격
이주 시점은 자녀 돌봄에 따라 결정

02

취업 제한·경제 어려움

동반비자 취업 불가 → 소득 제한 →
가족 불안정

03

체류자격 사다리

단계마다 고비 — 영주권은 맞벌이
없이 불가

04

부적응 문제

주 이민자·배우자·자녀·문화 소수자
세대 간 부적응 연쇄

05

지원 제도 혼란

비자·지자체·가족유형별로 제각각
접근 정보 자체가 부재

06

거주 전망 유동

정착도 귀환도 결정 안 된 상태
차별·노후 불안이 이탈 요인

- ▶ 이주민가족은 주이민자의 동반 자격으로 가족결합을 위해 이주하기도 하고, 부부가 각자 별도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기도 함. 전문인력이나 재외동포는 처음부터 가족이주를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 체류자격에서는 가족동반의 제약으로 인해 장기 분리 후 결합하는 경우도 많음. 가족결합 자체가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많은 이주민가족들은 자녀의 교육과 성장, 자녀 돌봄이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함. 일부에서는 한국의 사회안전과 의료 인프라를 이주의 계기로 언급하기도 함
- ▶ 취업 제한과 경제적 어려움은 이주민가족의 가장 큰 체류 장애요인임.
- 특히 기숙사 생활을 하던 노동 이주자, 유학생들은 가족과 함께 살 거처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됨. 뿐만 아니라 보증금, 월세는 가정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에 더해 식품비, 자녀 어린이집 비용까지 더해지면 가족생활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움.
 - 부부 모두 각자의 체류자격으로 전문직에 취업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함. 사실, 소위 '전문직' 종사자라고 해도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도 있음. 더욱이 유학생들은 취업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사전 허가도 받아야 하는 만큼 소득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이들에게는 배우자의 취업만이 가족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동반 가족 자격으로 체류 중인 배우자는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임.
 -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이주민들은 자녀 어린이집 비용이라도 아끼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을 미루거나 본국 부모에게 보내기도 함. 하지만 소득이 제한된 상태에서 가족생활비의 일부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오히려 자녀의 학교생활, 부모와의 관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나아가 소득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체류자격도 안정되기 어렵고 결국 가족생활 전반이 불안해질 수도 있음.
- ▶ 체류자격은 이주민가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침. 체류기간 종료 이후 체류자격 전환 과정에서 재취업이 어렵거나 소득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고비를 맞는 경우가 많음. 체류기간은 자녀 성장에도 중요한 요인임. 대부분의 이주민가족은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체류를 희망함.

- 유학생은 졸업 후 구직이 첫 번째 고비임. 그러나 유학생들의 구직 기회는 많지 않고, 특히 이공계 유학생 대비 인문사회계 유학생은 기회가 매우 좁음. 여성 유학생의 경우에는 임·출산으로 기회를 놓치기도 함. 지역특화형 비자가 생겨났지만, 지역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고, 전공이나 학력과의 미스매치가 심하다는 점에서 장기 지속의 어려움을 토로함.
 - 노동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거주 비자 취득이 일차적 목표이나, 점수제의 어려움, 소득수준의 높은 난이도 등이 장벽이 됨.
 - 영주권은 이주민가족의 선망의 대상임. 그러나 GNI 기준을 맞추는 것이 매우 힘들어서 사실상 맞벌이가 아니면, 불가능한 현실임. 사실상 체류 안정을 위해 영주권을 희망하지만, 사실상 안정된 체류여야만 영주권이 가능한 상황임.
- ▶ 이주민가족의 부적응은 무시할 수 없는 영향요인임. 특히 부적응의 양상 자체가 가족 구성원별로 상이하다는 점이 특징임.
- 주 이민자라고 해서 한국 적응이 담보되는 것이 아님. 취업 및 학업 중심 생활로 인해 한국어교육 시간이 실질적으로 없고, 가사와 육아까지 담당할 때에는 적응 기회가 더 제한됨. 특히 이러한 문제는 여성 이민자에게서 가중됨. 본인이 주이민자이면서, 유자녀인 경우, 사실상 학업/취업+가사+자녀돌봄의 삼중고에 시달리게 됨.
 - 동반배우자의 경우에는 취업 불가로 인해 한국어는 물론 사회적 네트워크 자체가 전무하여 사실상 고립된 생활로 출산과 육아만을 단독 수행하게 됨. 일부에서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견되기도 함.
 - 이주민 자녀의 경우, 학령기 이주시 적응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부모가 적응이 미흡한 경우에는 자녀의 적응 부담이 더욱 가중됨. 학교나 돌봄기관에서 차별을 경험하기도 함.
 - 소수 문화로 인한 가족 전체의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특히 무슬림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가족 내에서는 종교 규범을 지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려움이 큼.
- ▶ 이주민가족이 한국 체류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부재는 큰 공백으로 다가옴.
- 여기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자녀의 돌봄기관 비용 지원임. 국민에게는 무상보육이지만, 이주민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님. 그 제도적 공백을 개별 지자체가 메꾸는 상황인데, 지자체별로 지원 여부가 상이하고, 지자체 내에서도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적인 경우가 있다보니, 이에 대한 혼동이 큼. 이조차도 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이주민 당사자가 스스로 발굴하는 형국임.
 - 가족센터 이용에서도 혼란이 있음. 가족센터는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 대상으로만 서비스 지원을 했으나, 2024년부터 외국인가족에게도 서비스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집합식 교육 등 일부 프로그램에 한정되는 상황이며, 이 조차도 기관별로 차등적임. 게다가 전문직이나 유학생들은 가족센터 자체에 대한 인지도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음.
- ▶ 가족생활의 경제적 및 자녀돌봄의 어려움, 긴 노동시간과 낮은 임금 수준, 외국인 차별적인 성과 보상, 차별·혐오의 경험, 견고한 한국인 중심 구조, 노후생활의 불확실성 등은 이주민가족이 향후 한국 장기 거주를 선택하는 데 장애로 작용함.
- 그렇다고 귀환도 쉽지 않음. 고국의 정치, 경제, 교육, 고용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고, 오랜 한국생활로 사실상의 사회적 관계가 모두 한국에 형성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귀환 자체도 또다른 이주가 될 수 있음.

4 이주민가족 지원 정책: 전환적 시점

-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주민가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사실상 다문화가족 정책이 법, 기본계획, 전달체계, 연구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이주민가족 또한 이러한 정책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임. 현재 이주민가족은 사실상의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으로 다문화가족 위주의 정책에서 패러다임을 넓힐 필요가 있음.
- ▶ 다문화가족 용어 개선
- 현재 우리 정책에서 해당 용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기본 철학과 배치되며 특정 형태의 이주민가족과 다른 가족을 분리하고 현재 정부부처와 정부 정책 내에서도 용어 간 의미가 불일치하므로 이주민(이주배경)가족으로 개선이 필요함.

- ▶ 장기적으로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가칭)이주배경가족지원법」으로 전면 개정, 단기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전면개정 시, 이주민가족 아동·청소년의 보육·교육 및 모자 보건 관련 내용 포함
 - 현행 법 개정의 경우 1) 이주민가족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2) 이주민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정

☑ 용어 개선 : 다문화가족 → 이주민(이주배경)가족

- ☑ (1안) 「이주배경가족지원법」으로의 전면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 및 서비스 내용 전면 검토 및 개정
 - 이주민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및 돌봄 지원 명시
 - 이주민가족의 모자 보건 지원 명시
- ☑ (2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 (2-1안) 이주민가족 서비스 확대안
 - (2-2안) 이주민 아동·청소년 서비스 확대안

▶ 이주민가족 지원 서비스 개발 및 확대

- 가족센터 내 이주민가족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화하고, 체류기간, 입국유형, 서비스 대상별 등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제한

- ☑ 사회통합 관점에 따라 9개 영역별 주요 서비스 제안
 - 언어, 사회적응, 체류, 자녀 성장, 자녀 양육, 가족관계, 취업 및 고용, 지역사회 참여, 사회적 포용
- ☑ 이주민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틀 제안
 - 9개 영역별
 - 체류기간별(이주 준비, 초기 적응, 중기 정착, 장기 사회통합 단계)
 - 가족 입국 유형별(가족 동반 입국, 가족 재결합, 한국에서의 가족 형성)
 - 서비스 대상별(성인세대, 아동·청소년 세대(발달단계별, 연령별 등))
 - 초기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이후 전면 확대

▶ 이주민가족 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 종사자 대상 교육 확대 및 역량 강화, 전담인력제도 도입 등 인력 보강 및 전문성 강화, 종사자 고용 안정성 확보 및 임금체계 개선
- 이주민 네트워크, 이주민 서포터즈, 홍보대상 기관 다양화 등을 통한 가족센터 인지도 강화

- ☑ 가족센터 인력 보강 및 전문성 강화
 - 종사자 대상 교육의 확대 및 종사자 전문성 역량 강화
 - 이주민가족 전담인력 선발 및 운영
 -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 및 임금체계 개선
 - 종사자 인력 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
- ☑ 가족센터 인지도 강화
 - 다양한 이주민가족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의 정체성 재정립
 - 이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강화
 - 이주민 서포터즈의 활용
 - 홍보 대상 기관의 다양화 및 확대(대학 국제교류처 등)

▶ 이주민가족의 사회보장 대상 확대

- 사회보장 관련 외국인 특례 조항 신설

- ☑ 영주권자 대상 사회보장 제도 확대
- ☑ 일정 수준의 체류 자격을 갖춘 이주민 대상 사회보장 제도 확대
 - 체류자격, 체류기간, 소득 요건 등 세부 조건으로 기준 설정
- ☑ 이주민가족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의 개정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내 외국인 사회보장 관련 조항 신설

- 이주민 아동의 보육 지원 강화

-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관점을 국내 제도에 반영
 -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개정(일정 자격의 외국인 아동 포함)
 -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내 대상 지침에 외국인 아동 포함
-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매칭 펀드 구조 도입
 - (1안)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정부 부담. 0~2세 보육료는 지자체 부담
 - (2안) 정부+광역+기초 간 분담률 설정
- ☑ 보육료 결제 및 신청 시스템의 개편
 - 외국인등록번호나 거소신고번호로 신청 가능하도록 개편

▶ 이주민가족 체류자격 개선

- 동반 배우자 취업 활동 완화
- 비전문인력의 가족결합권 인정
- 동반 가능한 미성년 자녀 연령 기준 상향 조정(예, 21세) 등 체류자격 개선

- ☑ 동반 배우자의 취업 활동 완화
 - 최소한 영주(F-5) 및 거주(F-2) 체류자의 배우자에게 취업 활동 허가
 - 단순노무직 외에 서비스업, 판매업, 제조보조 등의 직군 확대 검토
 - 사전허가제 → 신고제 또는 포괄적 허용, 변경 유예기간 등의 방식 적용
 - 장기적으로 동반 비자의 체류자격 전환 요건 완화를 통해 주 이민자로의 체류자격 취득 경로 확대
- ☑ 비전문인력 가족결합권 인정
 - 비전문인력의 가족 동반 단계적 허용
 - 일정 기간 조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 추진
- ☑ 성년 자녀의 체류권 보장
 - (1안) 가족동반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21세 이하로 상향 조정
 - (2안) 국내체류 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해 (가칭)독립체류허가 발급